러시아 투자법률 동향과 대응

2020. 12. 3.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목 차

1. 러시아 투자환경
2. 러시아 투자 진출 형태별 특징
3. 외국인 투자 유치 정책
4. 투자계약
5. 미국 및 EU의 대러 제재
6. IT 기업 혜택

본 문서는 정보전달을 위한 참고용이므로, 제한된 자료와 정보에 기초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문서는 저희 법무법인의 어떠한 확정적이거나 최종적인 법률의견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판단 후 결정하시기 바라며, 본 문서 내 정보로 인한 결과에 대해 저희 법무법인은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본 메일의 내용 전체 및/또는 일부를 사용하시는 경우, 출처 명시 및 저희 법무법인의 동의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1. 러시아 투자환경

1

러시아 투자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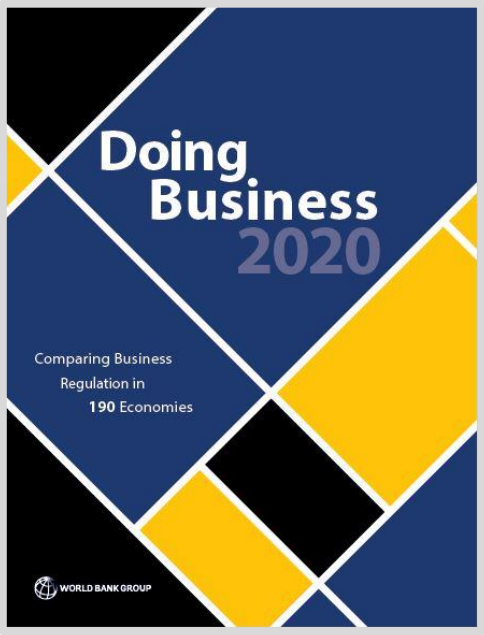

- World Bank Group이 전 세계 190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Doing Business 2020'에서 러시아는 전년 대비 3계단 상승한 **28위**를 기록하였음

  * 중국 31위, 베트남 70위, 인도네시아 73위, 캄보디아 144위, 미얀마 165위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012년 수립한 Doing Business 2020 20위권 진입 목표는 달성하지 못하였으나, Doing Business 2013 평가 당시 112위를 기록하였던 과거에 비해 순위가 급상승하였음

- 지난 러시아 대선과 헌법 개헌 결과 상당기간 현 정부의 경제정책이 유지/지속될 전망임

2. 러시아 투자 진출 형태별 특징

2

러시아 투자 진출 형태별 특징

회사의 형태

- 외국인 투자자가 러시아에 진출할 때 고려할 수 있는 법률적 조직형태는 ①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등을 포함하는 영리법인, ② 외국법인의 지점이나 대표사무소임

사업 형태의 결정

- 러시아 진출을 고려하는 외국인 투자자는 유한책임회사와 주식회사를 설립하거나 대표사무소 및 지점을 설치하는 방안을 우선 고려할 수 있음.
- 한국과 달리 러시아에서 가장 보편적인 사업법인 형태는 유한책임회사임.

2

러시아 투자 진출 형태별 특징

유한책임회사

유한책임회사는 1인 또는 수인이 설립한 물적회사로서 회사의 자본이 지분에 따라 분할되며, 원칙적으로 사원이 회사 채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출자액의 한도에서만 손실을 부담하는 회사를 의미함.

- 1인의 단독사원(발기인)에 의해 설립 할 수 있으며, 유한책임회사의 사원 수는 50인 이하여야 함
- 필수기관으로 사원총회와 업무집행기관(일반적으로 대표이사)을 두어야 함.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사원의 수가 15인 미만인 때에는 정관에 의하여 설치할 수 있는 임의기관이고, 사원의 수가 15인 이상인 경우에는 필수기관임. 유한책임회사는 위와 같은 기관 이외에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외부경영관리인을 둘 수 있음
- 일반적인 법인 설립기간(준비 기간 포함) : 실무적으로 6주 ~ 8주 소요

2

러시아 투자 진출 형태별 특징

주식회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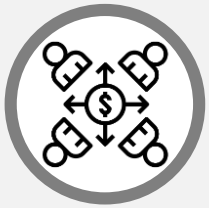

자본금이 일정수의 주식으로 분할된다는 점에서 유한책임회사와 구분되고, 주주들이 회사 채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는 않으나, 그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회사의 영업과 관련한 손실 위험을 부담하는 회사를 의미함.

- 러시아의 주식회사는 공개형 주식회사(Публичное акционерное общество)와 폐쇄형 주식회사(Непубличное акционерное общество)로 구분됨. 공개형 주식회사는 공모를 통한 주식 및 전환사채의 발행이 가능하고, 주식의 양도가 자유로우며, 주주의 수에 제한이 없는 반면 폐쇄형 주식회사는 공모를 통한 주식 및 전환사채의 발행이 허용되지 않으며, 기타 방식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매수를 제안할 수 없음

- 1인이 설립할 수 있고, 설립 후 1인이 주식 전부를 취득하게 된 경우에는 1인 주식회사로 유지될 수 있음. 한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방법률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주식회사의 주주가 될 수 없음

- 기본적인 필수기관은 주주총회, 업무집행기관, 감사(또는 감사위원회)임. 주주의 수가 50인 이상인 경우에는 이사회를 설치하여야 하고, 50인 미만인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경우에 이사회를 둘 수 있음

- 일반적인 법인 설립기간(준비기간 포함): 실무적으로 6주 ~ 8주 소요

2

러시아 투자 진출 형태별 특징

대표사무소

- 법인 소재지 아닌 곳에 위치하며, 법인의 이익을 대표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수행하는 법인의 독립된 사무소. 대표사무소는 기본적으로 본점의 영업활동을 보조하는 업무만을 처리할 수 있음
- 영리활동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법인의 이익을 대리하고 보호하는 활동, 예컨대 현지 영업망을 관리하고, 시장조사나 홍보활동 , 광고 등 보조적인 영업활동 지원 등의 행위만 할 수 있음
- 2015년 관련법 개정으로 외국법인의 대표사무소·지점의 존속기간 최대 5년 단위 규제가 폐지되어, 현재는 존속기간의 제한이 없음
- 일반적인 설립 등록기간(준비기간 포함): 실무적으로 약 3개월

2

러시아 투자 진출 형태별 특징

지점

'법인의 주된 소재지가 아닌 곳에 위치하며, 대표사무소 기능을 포함하여 법인의 기능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할 수 있는 법인의 독립된 영업소'를 의미함.

- 대표사무소와 마찬가지로 독립된 법인이 아니고, 본점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활동해야 하는 제한이 있지만, 본점 명의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표사무소와 구분됨
- 일반적인 설립 기간(준비기간 포함): 실무적으로 약 3개월

2

러시아 투자 진출 형태별 특징

법인 진출 시 고려사항

- 출자 범위 내에서만 유한책임을 부담
-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는 자격 보유
- 독립된 자산 보유 및 사용, 처분
- 영업활동에 필요한 라이선스 및 인허가 취득 가능
- 러시아 정부의 정책 수혜 대상 가능

지점/대표사무소 진출 시 고려사항

- 영업활동 제한
- 영업활동 제한으로 인해 영업활동에 필요한 라이선스 취득 제한
- 지점/대표사무소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 수 최대 5명으로 제한
- 외국인 근로자 수 5명 초과시 상공회의소에 필요성을 입증한 후 특별승인 취득 필요

한국 기업의 활동이 일시적이거나 단순보조적인 형태일 경우 지점/대표사무소를 고려할 수 있으며, 중장기적인 영업활동 형태일 경우에는 법인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음

3. 외국인 투자 유치 정책

3

외국인 투자 유치 정책

투자유치 담당기관

No.	기관	주요기능
1	러시아경제개발부 (투자정책·민관협력개발국) (Департамент инвестиционной политики и развития частно-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партнерства Минэкономразвития России)	러시아 외국인 투자유치정책 수립, 투자유치 중앙행정기관 업무 조율 및 외국인 투자사업 지원
2	극동개발부 (Минвостокразвития России)	극동지역 투자사업 지원
3	러시아 투자청 (Российское Инвестиционное Агентство)	외국기업의 러시아 진출을 위한 제도 마련, 외국인 투자 유치 및 투자분쟁 해결
4	러시아 전략이니셔티브청 (Агентство Стратегических Инициатив)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러시아 투자환경 개선
5	극동투자유치수출지원청 (Агентство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по привлечению инвестиций и поддержке экспорта)	극동지역 투자사업 지원
6	러시아직접투자기금(RDIF) (Российский фонд прямых инвестиций)	외국인 투자 유치 및 해외우수기술·인력 도입
7	극동개발기금 (Фонд развития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극동지역 투자유치

3

외국인 투자 유치 정책

외국인 투자유치 장려분야

(1) 최우선투자프로젝트

- 관련 법률: 러시아 외국인투자법(제160-FZ호, 제정 1999.07.09. 최근 개정 2018.05.31.)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т 09.07.1999 N 160-ФЗ (ред. от 31.05.2018) "Об иностранных инвестициях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러시아 외국인투자법상 최우선투자프로젝트는 외국인투자 총액이 10억루블(또는 중앙은행 환율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외국환) 이상인 투자프로젝트 또는 외국인투자자가 지분총액 1억루블(또는 중앙은행 환율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외국환) 이상을 출자한 투자프로젝트로서 러시아 정부가 승인한 사업목록에 포함된 투자프로젝트를 의미함

러시아 정부 지정 최우선투자프로젝트

No.	프로젝트	이행기간
1	하바롭스크 지방 소베츠코가반스키 군(Советско-Гаванский муниципальный район Хабаровского края) 항만 경제특구 설립	2010~2059년
2	연해주 '즈베즈다(Zvezda)' 조선단지 건설	2012~2021년
3	사할린주 사할린스카야(Сахалинская) GRES-2 발전소 건설	2012~2018년
4	하바롭스크 지방 소베츠카야가반 시(Советская Гавань Хабаровского края) 화력발전소 건설	2010~2018년
5	사할린주 첨단 전력망 신규 건설 및 재구축	2008~2018년

3

외국인 투자 유치 정책

외국인 투자유치 장려분야

(2) 특별경제구역

- 관련 법률: 러시아 경제특구에 관한 연방법률(제116-FZ호, 제정 2005.07.22. 최근 개정 2017.07.18.)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т 22.07.2005 N 116-ФЗ (ред. от 18.07.2017) "Об особых экономических зонах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러시아연방 내 특별경제구역 구분:
  (i) 산업 경제특구, (ii) 기술혁신 경제특구, (iii) 관광-레크리에이션 경제특구, (iv) 항만 경제특구

- 러시아연방법에 따라 설립되고 해당 경제특구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개인 사업자 또는 영리단체가 경제특구의 입주기업으로 인정됨. 경제특구 입주기업은 경제특구 외 지역에 지점 및 대표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으며, 경제특구 관리기관과 체결한 입주계약상 권리 및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음
- 항만 경제특구를 제외하고 다른 경제특구에는 입주기업이 아닌 개인 사업자 및 영리단체도 영업을 할 수 있음. 한편, 항만 경제특구에서는 유라시아경제연합(Eurasian Economic Union, EAEU) 외 국가로부터 수입된 외국 상품에 대하여 러시아 정부가 제한을 두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 신고 없이 통관 절차가 진행됨

3

외국인 투자 유치 정책

(i) 산업 경제특구(17개)

명칭	소재지
스투피노 크바드라트 경제특구, 카쉬라 경제특구, 막시미하 경제특구 (ОЭЗ "Ступино Квадрат", ОЭЗ "Кашира", ОЭЗ "Максимиха")	모스크바 주 (Московская область)
쿨리빈 경제특구 (ОЭЗ "Кулибин")	니즈니노브고로드 주 (Нижегородская область)
칼루가 경제특구 (ОЭЗ "Калуга")	칼루가 주 (Калужская область)
티타노바야 돌리나 경제특구 (ОЭЗ "Титановая долина")	스베르들롭스크 주 (Свердловская область)
도브로그라드-1 경제특구 (ОЭЗ "Доброград-1")	블라디미르 주 (Владимирская область)
리페츠크 경제특구 (ОЭЗ "Липецк")	리페츠크 주 (Липецкая область)
로토스 경제특구 (ОЭЗ "Лотос")	아스트라한 주 (Астраханская область)
모글리노 경제특구 (ОЭЗ "Моглино")	프스코프 주 (Псковская область)
오룔 경제특구 (ОЭЗ "Орел")	오룔 주 (Орловская область)
톨리야티 경제특구 (ОЭЗ "Тольятти")	사마라 주 (Самарская область)
우즐로바야 경제특구 (ОЭЗ "Узловая")	툴라 주 (Тульская область)
첸트르 경제특구 (ОЭЗ "Центр")	보로네시 주 (Воронежская область)
알라부가 경제특구 (ОЭЗ "Алабуга")	타타르스탄 공화국 (Республика Татарстан)
그로즈느이 경제특구 (ОЭЗ "Грозный")	체첸 공화국 (Чеченская Республика)
알가 경제특구 (ОЭЗ "Алга")	바시키르 공화국 (Республика Башкортостан)

3

외국인 투자 유치 정책

(ii) 기술혁신 경제특구(7개)

명칭	소재지
두브나 경제특구, 이스톡 경제특구 (ОЭЗ "Дубна", ОЭЗ "Исток")	모스크바 주 (Московская область)
테크노폴리스 '모스크바' 경제특구 (ОЭЗ "Технополис "Москва")	모스크바시 (город Москва)
상트페테르부르크 경제특구 (ОЭЗ "Санкт-Петербург")	상트페테르부르크시 (город Санкт-Петербург)
톰스크 경제특구 (ОЭЗ "Томск")	톰스크시 (город Томск)
사라토프 경제특구 (ОЭЗ "Саратов")	사라토프 주 (Саратовская область)
인노폴리스 경제특구 (ОЭЗ "Иннополис")	타타르스탄 공화국 (Республика Татарстан)

3

외국인 투자 유치 정책

(iii) 관광-레크리에이션 경제특구(13개)

명칭	소재지
비류조바야 카툰 경제특구 (ОЭЗ "Бирюзовая катунь")	알타이 지방 (Алтайский край)
보로타 바이칼라 경제특구 (ОЭЗ "Ворота Байкала")	이르쿠츠크 주 (Иркутская область)
자비도보 경제특구 (ОЭЗ "Завидово")	트베리 주 (Тверская область)
카스피해 연안 클러스터, 마틀라스 경제특구 (Каспийский прибрежный кластер, ОЭЗ "Матлас")	다게스탄 공화국 (Республика Дагестан)
베두치 경제특구 (ОЭЗ "Ведучи")	체첸 공화국 (Чеченская Республика)
바이칼스카야 가반 경제특구 (ОЭЗ "Байкальская гавань")	부랴트 공화국 (Республика Бурятия)
아르히즈 경제특구 (ОЭЗ "Архыз")	카라차예보체르케스카야 공화국 (Карачаево-Черкесская Республика)
엘브루스 경제특구 (ОЭЗ "Эльбрус")	카바르디노발카르 공화국 (Кабардино-Балкарская Республика)
아름히 경제특구, 초리 경제특구 (ОЭЗ "Армхи", ОЭЗ "Цори")	인구시 공화국 (Республика Ингушетия)
마미손 경제특구 (ОЭЗ "Мамисон")	북오세티야-알라니야 공화국 (Республика Северная Осетия – Алания)
북카프카스 리조트 관광클러스터 (Северокавказский туристический кластер "Курорты Северного Кавказа")	북카프카스 지역 (Северный Кавказ)

(iv) 항만 경제특구(1개)

명칭	소재지
울리야놉스크 경제특구 (ОЭЗ "Ульяновск")	울리야놉스크 주 (Ульяновская область)

3

외국인 투자 유치 정책

블라디보스톡 자유항(Свободный порт Владивосток)

- 러시아 정부가 블라디보스톡 항만을 중심으로 국경간 무역을 촉진하고, 연해주 지역을 아태지역 물류 중심으로 발전시킬 목적으로 지정
- 물류 분야(운송, 저장 및 화물 처리 등)에 대한 투자 유치와 물류 거점 확보, 비원자재 산업 및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추진
- 입주기업 업종 제한: 석유/천연가스 개발, 특별소비세 적용 제품 생산(일부 경차, 오토바이, 차량연료, 항공연료, 디젤연료 생산 제외), 행정지원서비스 분야 종사 기업
- 입주기업 혜택
  - 입주기업에 대해 설립 이후 3년 이내 5백만 루블 이상 최소투자금액 제한이 있지만, 다양한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함
    ① 최초 10년간 사회보장세 7.6% 적용
    ② 최초 5년간 법인세 0%(이후 12%) 적용
    ③ 최초 3년간 토지세 0% 적용
    ④ 최초 5년간 재산세 0%(이후 0.5%) 적용
  - 외국인 근로자 채용 절차 간소화(사용자의 외국인 근로허가 취득 절차 및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쿼터 미적용)

3

외국인 투자 유치 정책

스콜코보 혁신센터 (Инновационный центр ≪Сколково≫)

- 러시아 산업현대화 정책 사업
- 자원 및 에너지 의존형 경제구조 탈피를 위한 첨단 제조업 육성 정책의 핵심 사업
- 미국 실리콘밸리와 유사한 첨단기술단지 조성 및 인프라 구축
- 러시아의 과학기술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기술 상용화를 통한 첨단과학기술 기반 경제시스템 구축
- 산업별 클러스터
  IT, 바이오, 에너지, 산업기술/원자력/우주 산업 클러스터 조성
- 입주기업 혜택
  - 주로 첨단과학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 기업들이 입주하며, 엄격한 심사 과정을 통해 5개 기업 당 1개 꼴로 입주 자격이 부여됨
  - 입주기업에 대하여 투자 인센티브 및 보조금 지원 등을 제공 – 재단 산하에 조직된 보조금 지급위원회가 입주기업 경쟁 절차를 통해 선정 후 금융지원 서비스를 제공함
  - 입주기업이 초청한 외국인 전문가에 대한 HQS(고급전문가) 사증 발급시 최저 소득 제한요건이 미적용됨

3

외국인 투자 유치 정책

스콜코보 혁신센터 운영 프로그램

① Startup Tour

러시아 지역 산업 발전을 위해 주요 도시별 기술평가단 파견 프로그램으로 멘토링,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입주기업 지원

② Softlanding program

해외 스타트업의 러시아 시장 진출 및 스콜코보 입주기업 정착에 대한 자문 제공 - 업무 공간 무료 제공, 러시아 시장 정보 제공, 주요 연구소, 공공기관, 투자자, 전문가 등 협력 파트너간 연락망 형성 등

③ Startup village

각국 스타트업 기술 발표 및 투자자 매칭, 기술 공유를 위한 전시회로 2019년부터는 전시회 내 별도 한국 전시관 운영

④ Open Innovation

각국 고위급 산학연정 관계자간 네트워킹 프로그램으로, 글로벌 기술 브랜드 홍보 및 혁신 분야의 국제협력 방안 모색을 위한 플랫폼

3

외국인 투자 유치 정책

국제의료클러스터(Международный медицинский кластер (ММК))

- 러시아 정부는 러시아의 의료서비스 수준 제고, 의료 분야 교육 및 학술연구 발전, 의료 분야 국제협력개발 목적으로 국제의료클러스터를 조성하였음
- 국제의료클러스터 입주기업 선정
  -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이 입주신청서, 설립문서, 클러스터 활동에 대한 사업계획안, 해외 의료인의 학위 증명서 및 면허, 의료클러스터 내 사용 예정 의약품 및 의료기기에 대한 허가서 등 기타 구비 서류를 운영회사에 제출하고, 운영회사는 이를 심사한 후 입주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함
  - 입주기업과 운영회사간 클러스터 입주계약 기간: 10년
- 입주기업 혜택
  - OECD 회원국에 등록된 의약품 및 의료기기에 대한 러시아 내 별도 등록 의무 면제
  - OECD 회원국에 등록된 의료기관에 대한 러시아 내 의료서비스 면허 발급 의무 면제
  - OECD 회원국에서 취득한 해외 의료인 자격 인정
  - 외국인 근로자 채용 절차 간소화(사용자의 외국인 근로허가 취득 절차 및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쿼터 미적용)

4. 투자계약

4

투자계약

특별투자계약 2.0 (이하 'SPIC 2.0') (Специальный инвестиционный контракт (СПИК 2.0))

관련 법령

- 「러시아 산업정책에 관한 연방법률」(제488-FZ호, 제정 2014.12.31, 최근 개정 2020.07.20.)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т 31.12.2014 N 488-ФЗ (ред. от 20.07.2020) "О промышленной политике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특별투자계약 체결, 변경 및 해지 규칙 승인에 관한 총리령」(제1048호, 제정 2020.07.16, 최근 개정 2020.10.08.) (Постановл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от 16.07.2020 N 1048 (ред. от 08.10.2020) "Об утверждении Правил заключения, изменения и расторжения специальных инвестиционных контрактов")

법률상 투자계약의 정의

투자자는 특별투자계약에서 정한 기간 내 자기자본 및/또는 조달자금을 투자하여, 러시아 영토, 대륙붕 및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법률로 정한 기술을 바탕으로 산업제품의 생산 개발 목적 하에 기술유치 또는 기술개발·기술유치 관련 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할 의무를 부담하고, 러시아연방, 러시아주,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으로 특별투자계약 기간 내 자신들의 권한 범위 내에서 투자자의 경영 환경의 안정성을 담보하고, 러시아연방법률, 주법령,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거 특별투자계약에서 정한 산업 분야에서 투자자에 대한 영업활동 장려 조치를 취할 의무를 정하는 계약

4

투자계약

특별투자계약 2.0 (이하 'SPIC 2.0') (Специальный инвестиционный контракт (СПИК 2.0))

체결 조건

-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산업제품 생산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첨단기술 개발 및/또는 도입 계획
- 관련 법령 요건에 부합하는 프로젝트 보유
- SPIC 장려대책을 위한 러시아 연방정부의 총 예산비용을 상회하는 투자액

특별투자계약 2.0과 1.0의 차이

SPIC 1.0

- 2019. 08.13 이전에 체결된 SPIC 1.0은 해당 계약 종료 시까지 유효
- SPIC 1.0 의 변경/해지는 SPIC 1.0 체결 당시의 시행되었던 절차 및 요건 적용

SPIC 2.0

- 2019.08.13 이후 체결되는 SPIC 계약은 SPIC 2.0 절차 및 요건 적용

4

투자계약

특별투자계약 2.0 (이하 'SPIC 2.0') (Специальный инвестиционный контракт (СПИК 2.0))

SPIC 2.0 주요 조건

체결시기	당사자(공동주체)	당사자(민간주체)	최소투자액	계약기간
2019.08.13 이후부터 2030.12.31 체결 가능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자치단체 공동	1인 또는 다수의 투자자 (투자자에 의한 제3자 유치 가능 여부 미규정)	없음	•최대 15년(500억 루블(VAT 미포함) 이하 투자 시) •최대 20년(500억 루블(VAT 미포함) 초과 투자 시)

체결절차

① 공개/비공개 입찰 원칙(프로젝트가 군사, 특수/이중 목적의 기술 도입/개발과 연관된 경우 비공개 입찰 진행)

② 공개/비공개 입찰 결과 1인 또는 다수의 투자자 선정 가능

4

투자계약

특별투자계약 2.0 (이하 'SPIC 2.0') (Специальный инвестиционный контракт (СПИК 2.0))

SPIC 2.0 체결 시 세제혜택

① 투자자를 위한 세제혜택 유지

② 법인세 감면

- ✓ SPIC 에 따른 제품 매출액 총액이 법인 전체 매출액의 90% 이상인 경우
- ✓ SPIC에 따른 제품 매출액 총액이 법인 전체 매출액의 90% 미만인 경우로서 단, 감면액이 전체투자금액의 25%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 ✓ 개별 수입지출 회계처리 시
  - 연방정부 귀속 법인세 세율 0% 적용
  - 주정부 귀속 법인세 세율 최대 0%까지 인하 가능
- ✓ 2025년까지로 제한된 세제혜택 기간 폐지되나, SPIC 투자장려대책 시행으로 인해 러시아연방 예산 지출 및 미확보 세수의 총액이 SPIC 명시된 자금투자규모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일로부터 혜택 중단

SPIC 2.0 비세제적 장려대책

① 투자자의 경제활동을 위한 안정적인 여건 보장

② 정부지원비용이 투자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장려대책 중단

③ SPIC 체결 시점에 투자자에 대한 외국의 일방적인 제재 시 제재기간에 상응한 SPIC 계약기간 연장

4

투자계약

투자보호장려계약 (이하 '투자보호계약') (Соглашение о защите и поощрении капиталовложений)

관련 법률

「러시아 자본투자 보호 및 장려에 관한 연방법률」(제69-FZ호, 제정 2020.04.01.) (이하 '자본투자보호법')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т 01.04.2020 N 69-ФЗ "О защите и поощрении капиталовложений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체결조건

최소투자액

1) 러시아 정부가 투자보호장려계약(이하 '투자보호계약')의 일방 당사자인 경우로서 투자수행회사가 2억 루블~10억 루블을 투자
2) 모스크바 및 상트페테르부르크가 투자보호계약의 일방 당사자인 경우로서 투자수행회사가 2억 루블 이상 투자
3) 러시아 정부가 투자보호계약의 일방 당사자인 경우로서 보건, 교육, 문화, 체육 및 스포츠 분야 2억 5천 만 루블 이상 투자
4) 디지털 경제, 환경 및 농업 분야: 5억 루블 이상 투자
5) 가공업 분야: 15억 루블 이상 투자
6) 기타 분야: 50억 루블 이상 투자

4

투자계약

투자보호장려계약 (이하 '투자보호계약') (Соглашение о защите и поощрении капиталовложений)

투자보호계약 주요 혜택

계약 체결 시기 2018년 5월 7일 이후부터 2030년 1월 1일까지

계약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최대 6년 추가 연장 가능)

1) 50억 루블 이하 투자 시 : 최대 6년
2) 50억 루블 초과 100억 루블 이하 투자 시: 최대 15년
3) 100억 루블 초과 투자 시: 최대 20년

4

투자계약

투자보호장려계약 (이하 '투자보호계약') (Соглашение о защите и поощрении капиталовложений)

투자보호계약 체결조건

- 비용보전

러시아 연방예산 및/또는 주(州)예산에서 투자사업에 필수적인 국가 소유 산업기반 인프라 시설을 포함하여 산업기반 인프라 시설의 건설, 현대화 및/또는 재건축 직접 비용 및 이를 위한 대출이자 비용 보전

① 산업기반 인프라시설 실지출비용의 최대 50% 한도

② 부대 인프라시설 실지출비용의 최대 100% 한도

- 안정화 조항유지 보장

토지 이용, 도시건설 및 조세 분야

① 50억 루블 이하 투자 시: 최대 6년

② 50억 루블 초과 100억 루블 이하 투자 시: 최대 15년

③ 100억 루블 이상 투자 시: 최대 20년

4

투자계약

투자보호계약 vs 특별투자계약(SPIC 2.0)

구분	투자보호계약	특별투자계약(SPIC 2.0)
투자사업	특별 요건 없음	러시아 연방정부가 승인한 첨단기술 목록에 포함된 기술 도입 및 개발에 대한 투자사업
제한업종	사행업, 담배제조업, 주류 및 액체연료 제조업, 원유 및 천연가스 채굴업, 도소매업, 금융업, 비즈니스센터, 쇼핑센터 및 주택 건설업	해당사항 없음
최소투자액	2억 5천만 루블 (분야별 상이)	없음
계약기간	투자액에 따라 6년/15년/20년	투자액에 따라 15년/20년
체결시기	2018년 5월 7일 이후부터 2030년 1월 1일까지 체결 가능	2019년 8월 13일 이후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체결 가능
체결절차	민간사업주체/공공사업주체 제안 원칙 투자보호계약 명부 등재	공개/비공개 입찰 원칙 SPIC 명부 등재
주요 혜택	투자사업에 대한 정부의 투자자 지출 비용 보전 토지 이용, 도시건설 및 조세 분야 안정화 조항 유지 보장	세제혜택 특별투자계약 기간 중 활동을 위한 안정화 조항 유지보장
당사자	연방정부 또는 주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자치단체 공동

5. 미국 및 EU의 대러 제재

5

미국 및 EU의 대러 제재

미국의 대러 경제제재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 이하 'OFAC')은 특별지정대상자 목록(SDN List) 및 산업분야별 제재대상자목록(SSI List)을 작성하여 공개하고, 해당 List 등재자와의 거래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음.

제재대상

① 개인에 대한 제재 (특별지정대상자 – Specially Designated Nationals, 이하 – 'SDN')
- 러시아의 주요 정치인, 기업가, 기업에 대한 제재
- 제재 대상 특정인에 대한 미국 내 입국 제한, 미국인 또는 미국 기업과의 거래 제한, 미국 내 자산 동결 등 조치

② 산업부문에 대한 제재 (산업분야별 제재대상자 – Sectoral Sanctions Identification, 이하 – 'SSI')
- 러시아의 주요 산업부문으로 특정한 금융서비스, 에너지, 금속, 광업, 철도, 방위산업 등에 대한 제재

5

미국 및 EU의 대러 제재

미국의 대러 경제제재의 외국기업에 미치는 영향

외국인/외국법인에 대한 2차 제재

미국인에 의한 또는 미국 내 거래가 아닌 경우에도 거래 요건 및 효과에 대해 인지하였거나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SDN/SSI List에 등재된 제재 대상자 또는 그의 자녀, 배우자, 부모, 형제를 위하여 또는 대리하여 **상당한(significant) 거래를 용이(facilitate)하게** 하였거나, 기만적 또는 조직적인 거래를 한 외국인/외국법인에 대하여 미국 정부의 제재가 부과될 수 있음.

OFAC 의 2차 제재 부과 여부 판단 기준

① 상당한 (significant) 거래

① 거래 규모, 횟수, ② 거래의 성격, ③ 경영진의 인식수준 및 해당 거래의 지속성, 반복성, ④해당 거래와 제재대상자의 관계 등을 거래와 관련된 사실 및 거래 전반에 걸친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함

② 거래를 용이(facilitate)하게 한 행위

① 통화, 금융상품, 유가증권 또는 기타 가치의 제공, ② 구매, 판매, ③ 운송, ④ 교환, ⑤ 중개, ⑥ 자금 조달 ⑦ 승인 ⑧ 보증 ⑨ 기타 서비스의 제공 ⑩ 노무의 제공 ⑪ 소프트웨어, 기술 및 기타 상품의 제공과 관련된 활동 및 거래에 대한 모든 지원 행위 등을 포함하여 판단함

5

미국 및 EU의 대러 제재

EU의 대러 경제제재

지난 6월 말 EU 집행위원회는 대러경제제재를 2021년 1월 말까지 연장하였음. 이에 따라 석유, 금융, 방위산업 분야의 러시아 기업에 대한제재가 내년까지 유지될 예정임.

제재대상

- EU 회원국 국적을 가진 자
- EU 회원국 법률 에 의해 설립되거나 인가를 받은 모든 법인, 기관, 단체
- EU 영토 내에서 금지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 실행된 경우, 해당 외국 법인, 기관, 단체

5

미국 및 EU의 대러 제재

주요 제재 내용

- 이중용도 품목 및 기술 거래 제한
  원칙적으로 군사용 또는 최종 사용자가 군(military)으로 거래 상대방이러시아의 자연인, 법인, 기관, 조직인 경우또는 이중용도품목 및 기술이 러시아 내에서 사용되기 위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매매, 공급, 양도 또는 수출하는행위가 제한됨.

- 일반 군용물자 품목 및 기술 거래 및 지원 행위 제한
  거래상대방이 러시아의 자연인, 법인, 기관, 조직인 경우 또는 러시아 내에서 사용되기 위한 목적으로 일반 군용물자 품목에 포함된 물품과 기술의 제공·제조·유지·사용을 위한 직간접적인 기술 지원 행위가 제한됨.

- 석유 개발 생산 에너지 설비 및 기술 거래 제한
  러시아의 배타적 경제 수역 및 대륙붕을 포함한 러시아 영해에서 추진되는 ① 150m 이상 심해 석유 개발 및 생산 ② 북극권 한계선 북쪽 연안 석유 개발 및 생산 ③ 셰일 프로젝트 관련 법규에 명시된 물품(설비) 및 기술의 매매, 공급, 양도, 수출하는 행위가 제한됨.

- 자본시장 접근 제한
  대표적인 대형 러시아 국영은행들이 직간접적으로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EU 회원국 내 법인, 기관, 조직이 발행하는 만기가 30일을 초과하는 양도성증권, 단기금융상품의 직간접적인 구입, 판매, 투자 서비스 제공, 양도성증권 및 단기금융상품의 발행 지원 행위가 제한됨.

5

미국 및 EU의 대러 제재

러시아의 대응 제재 법률

대응제재 법률

미국 및 기타 외국 국가의 비우호적 행위에 대한 제재조치에 관한 법률 제127호(2018.6.4 제정)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мерах воздействия (противодействия) на недружественные действия Соединенных Штатов Америки и иных иностранных государств")

대응제재 법률이 정한 제재대상

- 미국 및 기타 비우호국
- 비우호국 시민
- 비우호국 관할 하에 있는 단체
- 비우호국, 비우호국 시민 및 단체가 직간접적으로 통제하는 단체

제재 내용

- 제재대상과의 국제협력 중단 또는 종료
- 제재대상으로부터 원료 및 물품 수입 금지 또는 제한
- 제재대상에 원료 및 물품 수출 금지 또는 제한
- 제재대상에 의한 용역 및 서비스 제공 금지 또는 제한
- 러시아 국유재산에 대한 민영화 사업, 러시아를 대리한 민영화 사업 추진 및 시행 금지 또는 제한
-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제재조치 (대통령에게 제재 조치를 확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에 따라, 향후 진행 중이던 사업활동이 제한 되거나 금지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야 함)

5

미국 및 EU의 대러 제재

서방 제재 관련 러시아 기업 보호 조치

- 분쟁해결 관할법원 지정/변경

  러시아 상사소송법 제248.1조 및 제248.2조 개정(2020.6.19. 시행)

  - 미국 및 EU 대러 제재 분쟁 해결 관할 법원에 관한 개정 사항
  - 개정 법률 시행일 이후(2020.6.19.) 발생하는 분쟁이 상사소송법 제248.1조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러시아 상사법원이 분쟁해결 관할법원으로 전속적인 관할권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 주요 요건

① 분쟁 일방 당사자가 외국 국가에 의해 제재를 받으며, 당사자들이 분쟁해결지에 관하여 합의를 하지 않은 경우

② 분쟁 일방 당사자가 외국 국가의 제재로 인해 당사자간 합의로 정한 분쟁해결 법원에 사건을 회부할 수 없는 장애가 발생한 경우(이와 같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적으로 제출해야 함)

6. IT 기업 혜택

6

IT 기업 혜택

- 러시아 정부는 고부가가치 산업인 IT 분야에 투자를 확대하고자 국가기술 이니셔티브 2035를 채택하여 AI,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을 핵심기술로 규정하였음.
- 러시아 정부는 IT 분야 러시아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제공을 위해 2020.7.31. 세법을 개정하였음.

세제혜택 적용 대상

① 정보기술업을 영위하며 컴퓨터용 프로그램·데이터베이스를 개발 및 판매하는 러시아 기업
- 러시아 연방정부가 규정한 절차에 따라 정보기술업 인가 취득
- 컴퓨터용 프로그램·데이터베이스 판매, 지적재산권 양도 및 라이선스 계약에 따른 사용권 제공 사업을 통해 해당 회사 매출의 90% 이상 발생
- 해당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7인 이상

② 기초전자부품 전자제품을 설계 및 개발하는 러시아 기업
- 러시아연방 정부가 승인한 절차에 따라 '기초전자부품·전자제품 설계 및 개발 용역기업명부'에 포함된 기업
- 기초전자부품·전자제품 설계 및 개발 용역 사업을 통해 해당 회사 매출의 90% 이상 발생
- 해당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7인 이상

6

IT 기업 혜택

IT 분야 러시아 기업 인정 시 세제혜택

구분	내용
법인세	법인세율 20%에서 3%로 인하 - 개정 전: 연방정부 귀속 법인세율 2%, 주정부 귀속 법인세율 18% (합계 20%) - 개정 후: 연방정부 귀속 법인세율 3%, 주정부 귀속 법인세율 0% (합계 3%)
공적보험료	공적보험료율 14%에서 7.6%로 인하 - 개정 전: 공적연금보험료율 8%, 공적사회보험료율 2%, 공적의료보험료율 4% (합계 14%) - 개정 후: 공적연금보험료율 6%, 공적사회보험료율 1.5%, 공적의료보험료율 0.1% (합계 7.6%)
부가가치세	'컴퓨터용 프로그램·데이터베이스 러시아프로그램 통합명부(도입시기: 2016년, 관리기관: 러시아 통신부)'에 등록된 러시아프로그램 관련 지적재산권의 판매 및 양도(온라인상 사용권 제공 포함) 시 부가가치세 면제
시행일자	2021년 1월 1일

JIPYONG

감 사 합 니 다

서울 | 순천 | 부산 | 상해 | 호치민시티 | 하노이 | 프놈펜 | 비엔티안 | 자카르타 | 양곤 | 모스크바